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5. 2. 6.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변론종결】2014. 12.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2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4,034,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 2의 나머지 항소,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 (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가.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454,211,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반소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 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 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좌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 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자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 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000좌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케이티비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2,000,000,000화를 양도하라(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2. 항소취지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828,246,575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당사자 지위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제3자 매각 :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П.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표.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제3자 매각 :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제3자 매각 :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 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 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 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 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 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새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

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이유】

1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을 제 1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나. 중앙부산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부산저축은행과의 컨소시엄 구성
- 피고 회사는 2006. 1.경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2010. 9. 29.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4. 24.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30.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각 변경되었다, 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피고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상법상 합자회사인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를 존속기한 5년으로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관투자자, 일반 법인,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제안을 하였다.
- 田. 인수 및 Exit 구조[3] Exit 구조가. PEF는 2-3년 내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경영정상화하여 인수희망자에게 매각나. 제3자 매각: 연 평균 12.0%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PEF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함다.
- 상장 : 경영정상화 후 조기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킴(연 12.0% 이상의 Upside Potential)[4] 예상 투자수익율■ 인수대상회사의 배당 및 주식 처분을 통하여 연 평균 12.0% 투자수익율 예상■ (M&A 또는 상장을 통한 Exit인 경우 + α 가능)IV. 컨소시엄회사 소개■ 수신 1조 1,942억 원으로 전국 114개 중 3위(부산지역 1위)■ 단일점포 전국 1위■ 1인당 전국 여신 1위■ 2005년 6월 세후 순이익 542억 원(전국 1위)■ 1999년 부실금융기관인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부산신용금고(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조기 경영정상화[4] 강점1. 우량한 자산 및 자본구조: 재무안전성과 재무융통성을 확보· 부산저축은행은 업계 수위의 자기자본규모와 자산이익율을 실현하고 있음· 타 상호저축은행에 비해 금융상품 개발, 여신분석능력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 저축은행업계가 우량상호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우량한 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유리한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음[별지] Exit 구조[1] Exit 구조 ■ PEF는 부산저축은행에 1년 뒤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Put Option) 가짐[2] 약정가격 (Put Option)Ex) 인수 후 3년 뒤 매각할 경우 (투자금액 100억 원)① 투자원금 100억 원② 약정이자, 배당금 34.5억 원: 연 12%로 지급(이자 + 배당금)합계 134.5억 원[3] 제3자에게 매각중앙부산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킨 후 연 12%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제3자에게 매각(전체지분의 약 35%)(부산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부여)[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중앙부산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한 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원금과 수익 회수[5] 확약서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주주 중 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PEF의 무 ·유한책임사원에게 확약서를 제공함■ 부산저축은행은 Strategic Investor로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경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가치증대에 최선을 다함■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함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피고 회사는 2006. 2. 2. 케이티비에스비(KTB-S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이 되었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갑 제5호증)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